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선 산 보 건 소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제5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2) 필요성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와 중앙정부 정책의 변화 등 정신건강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숙련된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다. 위탁사무 :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반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른 정신건강사업

(2)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3) 정신건강증진사업

(4) 자살예방사업

(5)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라. 시설현황

시설명	건물면적(㎡)	종사자	센터장	소재지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86.2	11명	이은주	선산읍 선주로 121 (선산보건소 2층)

* 센터장 1, 방문보건팀장 1, 주무관 1, 팀원 8

마. 위탁기간 : 2025. 1. 1. ~ 2029. 12. 31. (5년)

바. 소요예산 : 530백만원(국263, 도80, 시187) ※ 2024년 기준

※ 2025~2029년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예산 변경될 수 있음

사. 수탁기관 선정개요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

(1) 선정방법 :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2) 수탁기관 자격

-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정신건강 관련 학과 설치 대학교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3) 센터장 자격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아. 적정성 검토 : 적정 ※ 2024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자.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3)「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제5조

(4)「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8조

(5)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수탁기관의 선정·계약·역할)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5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구미·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구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 시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10조의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수탁기관의 선정·계약·역할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도 가능. 재계약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이며 위탁기관의 장이 정함.

○ 위탁 계약 체결 시 지자체 조례 내용을 우선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기존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여야 함. 이때, 고용기간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수탁기관 계약한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추진 등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산정함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향후 5년간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은 총 2,817백만원으로 연평균 563백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차 연도부터 사업비 매년 인상률 3%로 반영함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530	546	563	580	598	2,817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263	271	279	287	296	1,396
도 비	80	82	85	88	91	426
시 비	187	193	199	205	211	995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530	546	563	580	598	2,817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경상북도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선산보건소 방문보건팀 노혜림(☎480-4376)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4년 기준)

사 무 명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비용	530,000천원		
사 업 비 세 부 내 역			
기 간	항 목	계 (천원)	산 출 기 초
2024	합 계	530,000	
	인 건 비 (기 본)	305,000	(기본급) 250,000,000원(10명, 12개월) (퇴직적립금) 25,000,000원×1식 (4대보험부담금) 30,000,000원×1식
	인 건 비 (수 당)	48,100	(특수근무수당) 7,000,000원×1식 (가족수당) 10,000,000원×1식 (명절수당)(기본급60%*2회) 30,000,000원×1식 (시간외근무수당) 1,100,000원×1식
	여 비	9,600	(여비) 100,000원×8명×12월
	운 영 비	51,100	(운영비) 51,100,000원×1식 * 복사기, 정수기 등 임차, 사무용품 구입, 비품구입, 시설 유지비, 운영위원회 운영, 종사자 교육비 등
	사 업 비	116,200	(사업비) 115,000,000원×1식 *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캠페인 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자살시도자 신체 치료비) 1,200,000원×1식

소 관 부 서		선산보건소
입	소 장	이 은 주
안	팀 장	김 수 정
자	담 당 자	노 혜 림 (480-4376)